

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(제11조제1항 관련)

국외학교	지급액
1. 유치원(제11조제1항제1호가목·다목에 따른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)	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유치원(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도 포함한다)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(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지급하되,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.
2. 초등학교·중학교(제11조제1항제1호나목·다목에 따른 초등학교·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)	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초등학교·중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(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지급하되,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월평균 학비가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.
3. 고등학교(제11조제1항제1호다목·다목에 따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)	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(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지급하되,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월평균 학비가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초과액의 65퍼센트까지를 지급할 수 있다.

비고

- 위 표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(미국·영국·캐나다·오스트레일리아·뉴질랜드는 제외한다)와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교육시설·교육수준 등이 현저히 미비한 국가 또는 전쟁·내전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국가에 주재하는 재외공무원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자녀를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시킨 경우 그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를 말한다. 다만, 주국제연합 대한민국 대표부 소속 재외공무원 중 직무상 뉴욕시 맨하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녀가 그 지역에 있는 사립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과 주호놀

를루 대한민국 총영사관 하갓나 출장소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괄도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,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퀘벡주에 있는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 및 주영국대사관 소속 재외공무원으로서 그 자녀가 런던시에 있는 사립의 중학교·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한다.

2. 재외공무원이 위 표가 적용되는 재외공관으로 전임(轉任)할 때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아오던 자녀(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인 자녀로 한정한다)가 학업의 연속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학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속해서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표를 적용하며, 해당 자녀가 그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고 제1호에 따른 종전 근무지의 국외학교 또는 종전 근무지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취학하고 있거나 취학하게 되는 그 자녀의 형제·자매에 대해서도 위 표를 적용한다.